



지난 3월 3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의 독서진흥법 공청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국회통과

지난 3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독서환경 변화의 긍정적 전기 마련

책의 해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지난 3월 3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1993년 12월 17일자로 강인섭의원 외 20인의 발의로 제출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도서관을 비롯한 문고시설등을 확충하여 일반국민에게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법(1991년 3월 8일 제정, 법률 제4352호)을 폐지하고 법의 명칭을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바꾸어 새로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전국에 걸쳐 문고를 광범위하게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제7장), 국민독서진흥과 그 활성화를 위한 '독서진흥'(제9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문 10장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고 설치에 관한 제7장은 이 법의 핵심내용으로 열악한 도서관 시설을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문고를 설치·운영하여 일반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전국의 읍·면·동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장, 주거단지, 건축물 등에 공립, 또는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고 있다(법 제39조).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제9장)은,

문고의 설치와 함께 독서의 생활화, 독서교육, '독서의 달' 제정 등 범국민적 독서운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도서관 문고 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그동안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던 독서지도요원,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설치, 도서관협회 등의 설치에 관한 문제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독서지도요원에 관한 사항은, 당초 문고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문고에 사서직원을 두거나 독서지도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었으나, 독서지도요원을 삭제하고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발전위원회와 독서진흥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규정했던 기존의 시안에 비해 이번에 마련된 법률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규정하고 있어 양자간의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협회 외에도 문고협회 등 기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부칙 제5조에서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중앙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설치에는 이 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시설, 자료의 확충, 사서직원의 자질 및 연구, 기타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그리 수월치 못했다. '독서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의 시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4월이었으나 8월 4일 열린 1차공청회에서부터 위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에 대해 나와 법제정시기가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것. 도서관협회와 출판협회간의 이견에 대해 지난 10월 16일 책조위원회 김낙준 회장과 도서관협회 박

계홍 회장의 전격 합의가 이루어져 국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당초 시안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들을 '권장사항'으로 바꾸어 실질적인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책의해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독서진흥법에는, 읍·면·동에 1개 이상의 공공문고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일반사업장과 주거단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사설문고 설치를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를 통과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이를 모두 권장사항이나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독서진흥기금도 이 법은, 당초에 정부의 출연금과 민간의 기부금은 물론 채권발행, 공익이나 공공의 입장료에 기금을 포함시켜 마련토록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항은, 기존의 공공립도서관이나 각급 학교 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독서나 도서대출이 이 법의 제정으로 마을이나 직장 등 독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문고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이다. 부수적으로는 이와같은 독서환경변화가 도서의 잠정구매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도 예견되고 있다.

출판협회 정중진사무국장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국민의 독서생활화에 있다"고 하면서 "오는 7월 이 법에 따른 시행령이 발표되면 일반 국민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出版企劃翻譯
(중국어도서기획 번역전문)
《全分野 · 全種別》

한글출판정법학회
한글출판정법학회

• 新着原書 · 뉴프로젝트 多量保有
代表 黃秉國
(前 숙대교수 · 출판사 기획실장 · 중국학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0단지 31동앞
전화 : 645-7052

▲ ▲ ▲

Pd Pub. design

.....

북디자인 · 광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심볼마크 · 로고서체 디자인
브로셔 디자인

전화(02)953-0621

• Bookdesign

DESIGN 藝 園

표지 디자인부터
본문 편집디자인까지
출판과 관계된 모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예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4-14 프론트B/D 301호
TEL : 518-7621~2 FAX : 518-7621

'도서상품권'

0000000100000011

도서상품권 ₩5000 전국공통

1000000

보낼수록 좋은 선물
받을수록 기쁜 선물

한국도시보금(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산동 295-15
TEL: 852-4769/FAX: 852-4768
1152-0111